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74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오세희·장종태·박희승

전진숙・황 희・김교흥

문진석 · 김태선 · 김태년

김동아 · 강준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인력·판매·수출 지원, 상거래 현대화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u><신 설></u>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
	율화 지원
<u>6.</u> (생 략)	<u>8.</u> (현행 제6호와 같음)